

고 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- 348 호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율주행자동차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6월 24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

구분	시범운행지구의 명칭	위치	관할 시·도
1	강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 일대	서울특별시
2	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서울특별시 청계천로 일부 구간	서울특별시
3	다이나믹 원주(Dynamic Wonju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원주시 반곡관설동 일원	강원도
4	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강릉시 경포동, 교동, 중앙동, 홍제동, 초당동, 포남동, 옥천동, 송정동, 견소동, 강문동 일원	강원도
5	경기도 시흥시 배곧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및 정왕 3,4동 일원	경기도
6	전남 순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전라남도 순천시 일원	전라남도
7	전라북도 새만금 고군산(Go-Gunsan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일원	전라북도
8	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및 수정구 일원	경기도
9	광주광역시 특수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광주광역시 수완지구, 평동산업단지, 빛그린산업단지, 첨단2지구 일원	광주광역시
10	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	대구광역시 수성구, 달성군 일부 구역	대구광역시

강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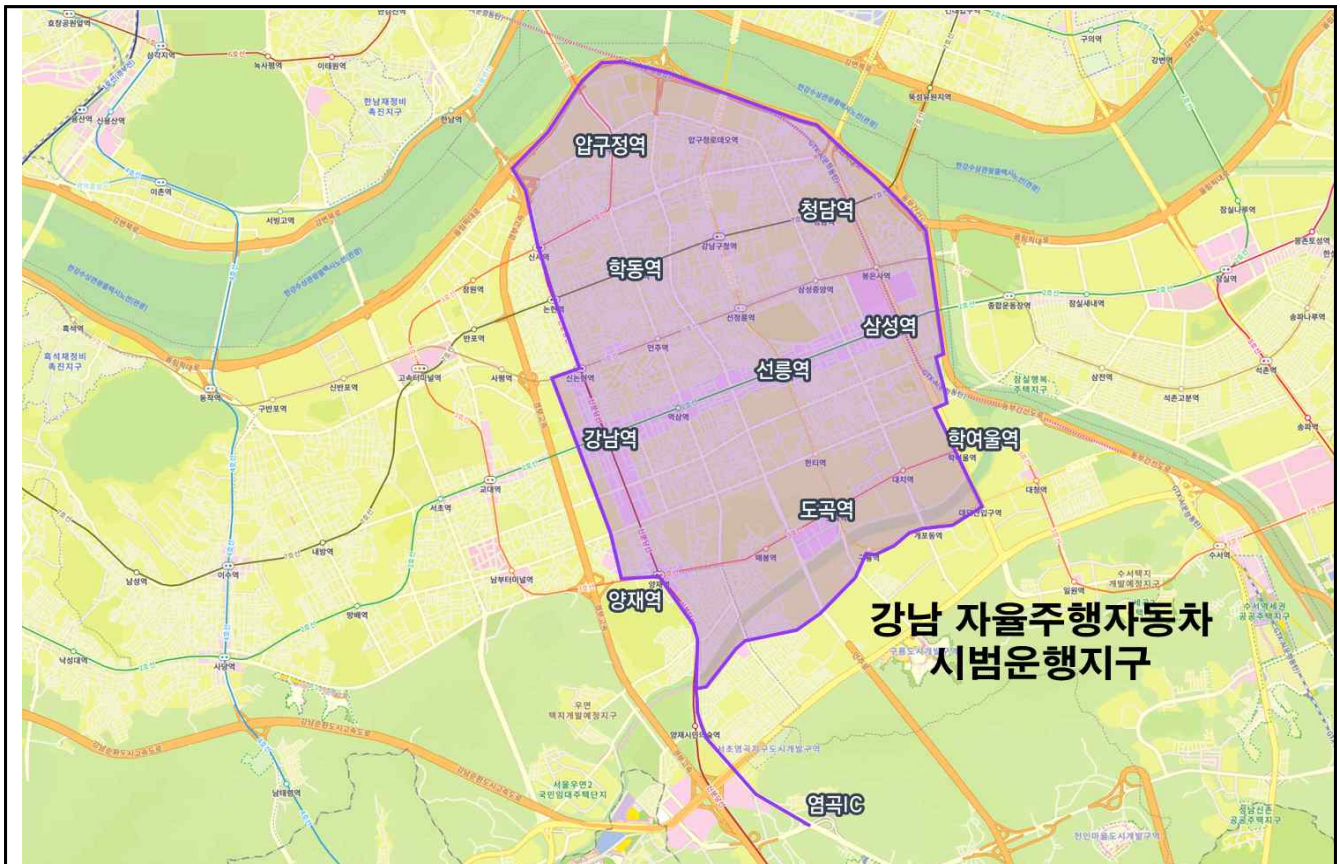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강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(Gangnam Autonomous Mobility Testbed)
- 관할 시·도 : 서울특별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치	면적 또는 연장
1	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 일원(32개 도로 총 85.3km)	20.4km ²
계		20.4km ²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목적
 - 강남 일원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확대로 신교통수단 정착
 - 글로벌 기업과 함께 친환경 자율주행 발전 모델 정립
 - 자율주행이 도시교통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환경 접목
 - 24시간 안전한 자율차 운행 및 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
- 지정기간 : '22. 6.24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조례의 제정

-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」(이하 “서울특별시 조례”라 한다)를 제정

○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

- C-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
-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, 전기차 충전소 제공
-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원금 지급
- 기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원 사항(별도 고시)

○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신호정보 등 제공을 위한 C-ITS 인프라 구축(현재 일부 구간 구축 완료)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
-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표지판 및 정차면 설치
-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(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)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하위법령,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름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100대('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)
- 자율주행 서비스·실증 모델
 - 자가용 유상운송 운행 구간 및 범위: 시범운행지구 일원
 -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: 한정면허 발급 범위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자가용 유상운송	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 수요에 따라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운영하는 자가용 유상운송 실시	45대
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	지하철역과 주요 지역 간 정해진 노선을 운행	30대
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	서울시 한정운수면허 발급시 허가된 노선기반 수요응답 서비스	25대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서울특별시 조례 :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, 제정 이후)
- 관련 고시·공고 :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⇨ 서울소식 ⇨ 공고 ⇨ 고시공고(www.seoul.go.kr/news)
- 문의처 :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(02-2133-4963)

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(Cheonggyecheon Autonomous Mobility Testbed)
- 관할 시·도 : 서울특별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치	면적 또는 연장
1	서울특별시 청계천로 서비스 운영 노선(1개 도로 총 6.4km)	6.4km
2	서울특별시 새문안로 등 회차 노선(8개 도로 총 2.4km)	2.4km
계		8.8km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목적
 - 자율주행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보장 및 생산적 시공간 활용을 통한 이동의 가치 증진
 - 자율차 기반 미래 표준 도시공간 재창출
 -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험 기회 제공
 - 자율주행환경에서 도로 이용자 안전성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
- 지정기간 : '22. 6.24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조례의 제정 및 개정

-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」(이하 “서울특별시 조례”라 한다)를 제정

○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

- C-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
-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제공
-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원금 지급

○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신호정보·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-ITS 인프라 구축(현재 일부 구간 구축 완료)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
-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표지판 및 정차면 설치
-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(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)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 및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하위법령,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름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5대
 -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

구 분	연장(km)	운행경로	대 수
운영 노선	6.4	청계광장~청계6가~청계광장(6.4km, 왕복)	5대
회차로(수동주행)	2.4	새문안로, 사직로 등	-
합 계	8.8	-	-

* 세부사항은 여객유상운송 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서울특별시 조례 :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
- 관련 고시·공고 :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⇨ 서울소식 ⇨ 공고 ⇨ 고시공고(www.seoul.go.kr/news)
- 문의처 :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(02-2133-4963)

다이나믹 원주(Dynamic Wonju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다이나믹 원주(Dynamic Wonju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강원도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치	면적 또는 연장
1	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(원주여자고등학교~메가박스)	4.5km
2	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(반곡중학교~푸른숨LH)	5.5km
계		10km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- 지정목적
 -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도입을 통한 도시특성 및 시민 요구사항 다변화에 대응, 대중교통 음영 지역 주민 이동 지원
 - 원주시 내 신도시의 부족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및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모델 확립

- 스마트 타운 챌린지 솔루션과의 연계 및 서비스 효과 극대화, 횡성 E-모빌리티 복합단지와의 연계한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

○ 지정기간 : '22. 6. 24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
- 혁신도시의 주요 주거지, 공공기관, 상업지역 등을 순환하는 도심 순환 셔틀형 유상운송 서비스

○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시범운행 지구내 기 구축된 ITS 인프라를 활용, 자율주행차량과의 신호정보 연계 이외에도 스마트교차로를 활용한 검지정보 개방 등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
-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안전표지 등 인프라 구축 및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보유관리하는 인프라(차고지 등) 및 유지보수 관리시설(경정비 등) 제공
-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기반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제공
-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 준수를 위한 지침 마련, 자율주행 안전 운행을 위한 자체 도로관리 계획 수립, 자율주행을 위한 한정운수 면허 발급 시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사전절차 이행명령 규정 등
- 관계기관(경찰청, 소방서, 응급의료센터)이 참여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시 신고·대응 절차 규정 마련을 통해 자율주행서비스 안전강화
- CCTV를 통해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도로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실시

· 허가조건

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이 본 시범운행지구의 운행 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.
-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대한 지휘·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증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- 서비스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어권 전환, 주행 중 고장 등에 대처가 가능하고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를 지정(다수 지정 가능)하여 원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운행 시에는 해당 안전관리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상시 탑승해야 함
- 사고시 대응 방안(사고차량 이동, 비상연락망 등), 비상 시 개문방법, 차내 소화기 표식 및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(차량 규모에 따라 필요 시)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방안을 제출해야 함

·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
-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
- 원주시의 시범운행지구 운영 정책에 따라 운행 빈도 및 요금을 설정하여야 함
-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원주시의 운행 대수·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

- 기상·도로상황에 따른 관할 시·도의 운행 조정 또는 제한에 따라야 함
- 일반 차량과의 접촉 우려가 있는 시범운행 시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함
- 원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

·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5대('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)

구 분	허가대수(대)		내 용
	'22	'23 이후	
여객운송 사업	2	5	수요응답형 셔틀

* 세부사항은 여객유상운송 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-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·공지 예정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원주시청(www.wonju.go.kr)
- 문 의 처 : 원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(033-737-3516)

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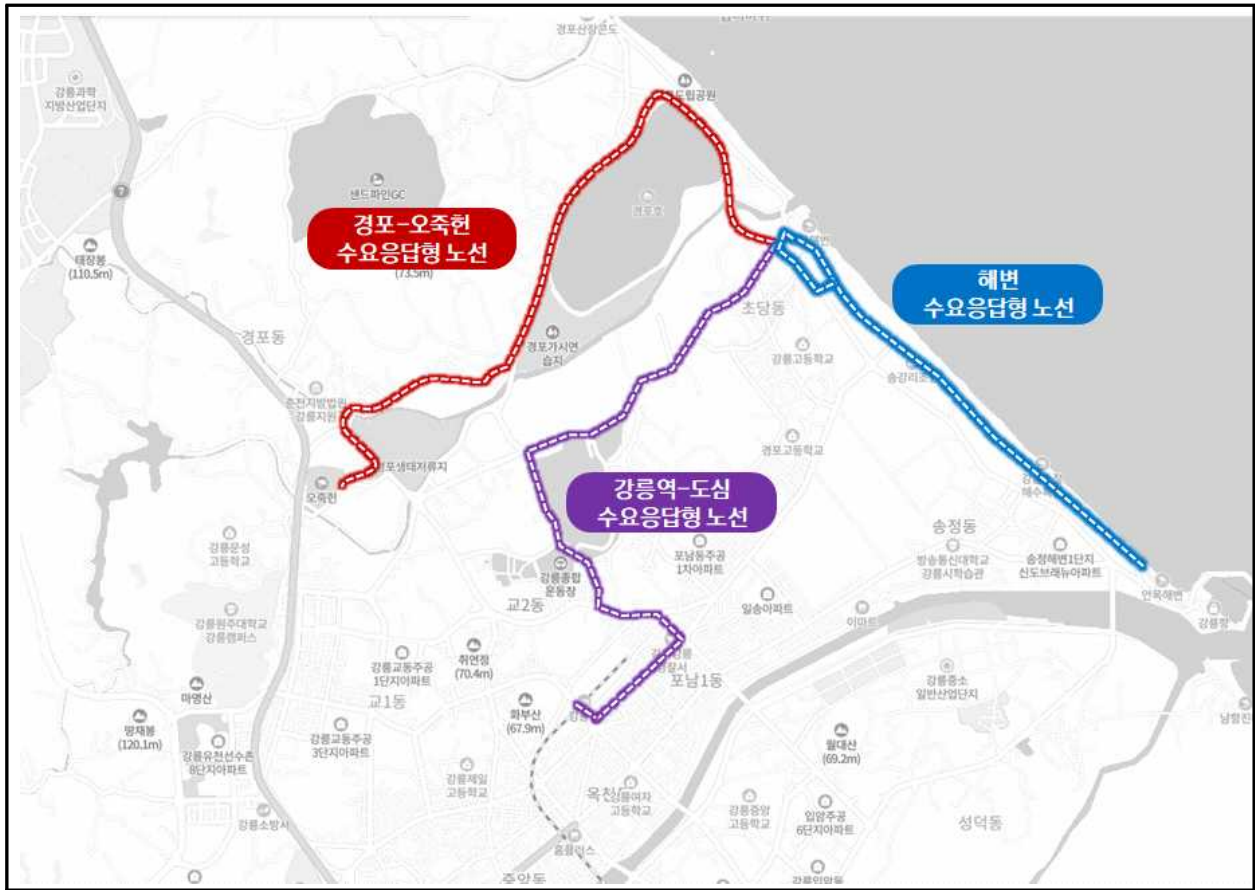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강원도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치	면적 또는 연장
1	A 강원도 강릉시 관내(강릉역 ~ 올림픽파크 ~ 초당순두부마을 등)	5.8km
	B 강원도 강릉시 관내(올림픽파크 ~ 아르떼뮤지엄 ~ 초당두부마을 등)	3.0km
2	강원도 강릉시 관내(강문해변 ~ 경포호 ~ 선교장 ~ 오죽헌 등)	6.0km
3	강원도 강릉시 관내(강문해변 ~ 송정해변 ~ 안목해변 등)	4.0km
계		15.8km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○ 지정목적

- 인접한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성 및 이동성 강화
- 시간적·공간적으로 집중되는 관광수요를 위한 수요대응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 연계성 강화
- 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 시, 자율주행 서비스 활용으로 국제 홍보효과 극대화
- ▶ 관광형 중소도시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 확립

○ 지정기간 : '22. 6. 24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
- 강릉역 ~ 올림픽파크 ~ 초당순두부마을 경유하는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
- 올림픽파크 ~ 아르떼뮤지엄 ~ 초당순두부마을 경유하는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
- 경포해안 ~ 경포호 ~ 오죽헌 경유하는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

- 강문해면 ~ 중정해면 ~ 안목해면 등을 경유하는 주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

○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시범운행 지구내 기 구축된 ITS 인프라를 활용, 자율주행차량과의 신호정보 연계 이외에도 스마트교차로를 활용한 검지정보 개방 등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
- 사업자 서비스모델 노선에 따른 임시정류장 설치 및 관련 도로 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
- 강릉 미래교통복합센터(신설 예정) 주차시설 내 자율주행 차량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차고지 및 정비지원시설 제공
- 유상운송서비스 참여기업의 한정운수면허발급을 위한 기술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
- 테스트 베드 구역 내 정밀도로지도 기반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구현 및 제공
-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 준수를 위한 지침 마련, 자율주행 안전 운행을 위한 자체 도로관리 계획 수립, 자율주행을 위한 한정운수 면허 발급 시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사전절차 이행명령 규정 등
- 관계기관(경찰청, 소방서, 응급의료센터)이 참여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시 신고·대응 절차 규정 마련을 통해 자율주행서비스 안전강화
- CCTV 등의 ITS 시설물을 통해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시범운행지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· 허가조건

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이 본 시범운행지구의 운행 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.
-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대한 지휘·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증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- 서비스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어권 전환, 주행 중 고장 등에 대처가 가능하고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를 지정(다수 지정 가능)하여 강릉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운행 시에는 해당 안전관리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상시 탑승해야 함
- 사고시 대응 방안(사고차량 이동, 비상연락망 등), 비상 시 개문방법, 차내 소화기 표시 및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(차량 규모에 따라 필요 시)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방안을 제출해야 함

·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
-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
- 강릉시의 시범운행지구 운영 정책에 따라 운행 빈도 및 요금을 설정하여야 함
-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강릉시의 운행 대수·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
- 기상·도로상황에 따른 관할 시·도의 운행 조정 또는 제한에 따라야 함
-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 받은 안전관리자 겸 운전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함.
- 강릉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

·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10대('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)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수요응답 서비스	지정된 노선을 수요에 따라 순환하는 운행 서비스	
도심순환 셔틀버스	도심에서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 서비스	

* '22년 운영수요 및 서비스 확산에 따라, '23년부터 서비스 차종 및 노선 운행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.

*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- 기타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험운행지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·공지 예정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강릉시청(www.gn.go.kr)
- 문 의 처 : 강릉시 미래성장과 기반시설팀(033-640-4520)

경기도 시흥시 배곧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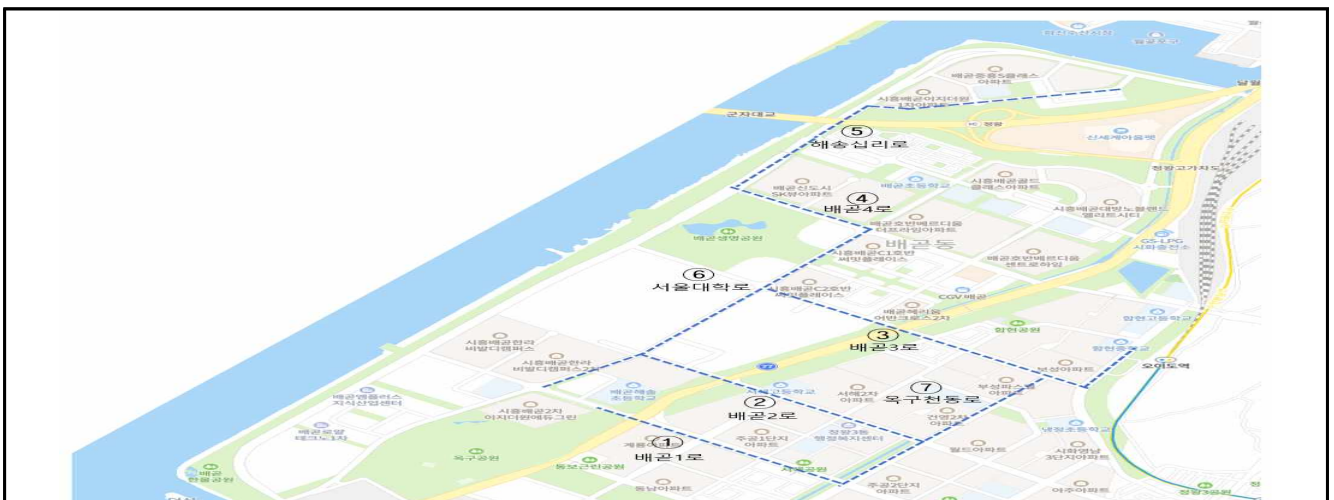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경기도 시흥시 배곧 자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경기도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치	면적 또는 연장
1	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및 정왕 3,4동 일원	12.8km
계		12.8km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○ 지정목적

- 지역 내 대중교통이 잘 구성되어있지 않아 수요응답형 및 노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
- 안전한 실도로 실증 환경 제공과 규제특례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

○ 지정기간 : '22. 6. 24. 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

-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
- 오이도역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배곧동 내 승하차 장소를 거점으로 운행하는 예약 기반 자율주행차 '유상 여객 수요 응답형 서비스'

○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(FMTC)가 있어 자율차 준비실과 자율주행시험장 및 종합관제실 등을 갖추고 있고, 자율주행 솔루션 안전검증 프로세스 시스템“All-in-One”이 구축되어 있어 상시 실험주행 및 모니터링, 점검 등이 가능
- 종합관제센터에서 안전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
- 기 설치된 CCTV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상황과 도로 환경 등을 실시간 파악
- 운행요원 상시탑승 및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성 확보
- 고정밀지도 정보 반영 연 2회 업데이트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 상태 유지
-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및 시흥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과 연계
- 자율주행 관제 및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국가중점사업 데이터 사업과 연계
- “시흥시 자율주행 안전관리 민관협의체” 신설, 운영을 통한 시범운행지구 내 서비스 운행과 관련된 안전관리 역할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· 허가조건

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이 본 시범운행지구의 운행 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
- 60km/h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할 수 있어야 함
- 자율주행자동차에는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상시 탑승해야 함

-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약천후, 비상상황 등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주행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
 - 월별/연간 운행실적을 ‘경기도 시흥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리 협의회’의 ‘성과관리 분과’에 보고해야 함(보고방법 등은 별도로 공지)
 - 본 시범운행지구 운영 정책에 따라 운행 요금을 설정해야 함
 - 본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함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7대(자율주행자동차 승용형 6대, 승합형 1대)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유상 서비스	여객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를 모두 포함한 대수	
무상 서비스	서비스가 안정화 되기까지 기한을 정하여 무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수의 상한	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○ 기타

-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청,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 공지 예정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경기도청 (www.gg.go.kr), 시흥시청 (www.siheung.go.kr)
- 문 의 처 : 경기도 미래산업과 자율주행첨단단지팀(031-8008-5352), 시흥시 철도과 철도기획팀(031-310-0773)

전남 순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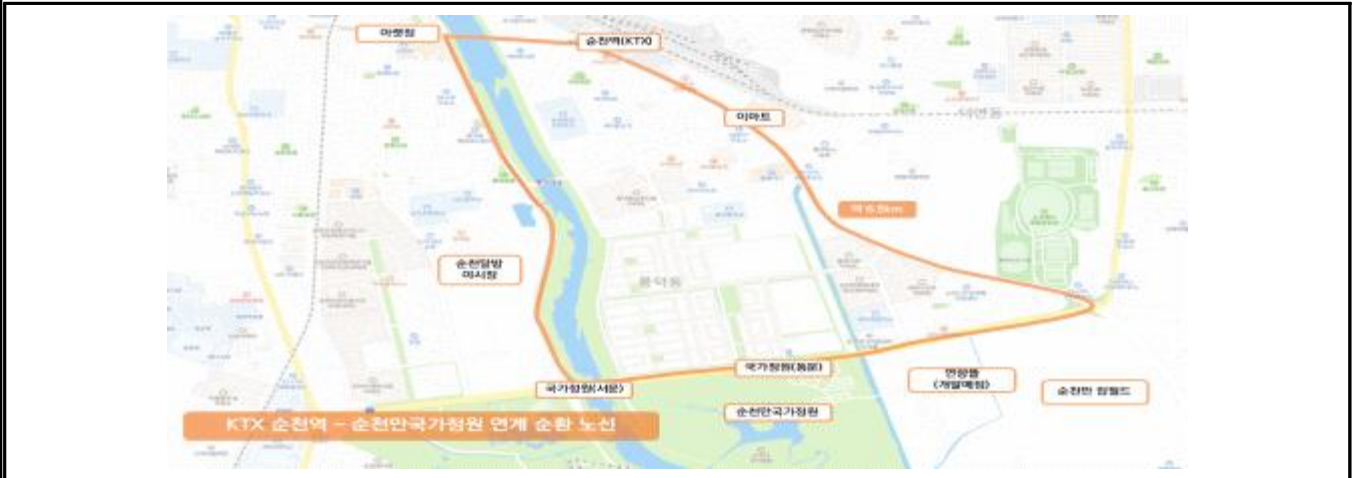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전남 순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전라남도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위 치	면적 또는 연장
1	전남 순천시 팔마로 등 일원	6.5km
2	전남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 일원	2.7km
계		9.2km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【전남 순천시 KTX순천역~ 국가정원 일원】



【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(동문) 일원】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○ 지정목적

-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대중교통 공존·연계형 도심자율주행으로 지역 교통체계 개선
- 국가정원내 자율주행·e-모빌리티 융합으로 공존형 모빌리티 관람문화 조성
- 시범운행지구 운영으로 도심자율주행 기반 산업 육성 및 연구 지원

○ 지정기간 : '22. 6. 24. 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-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 - KTX 순천역 ~ 순천만 국가정원 연계 도심도로 대중교통 공존형 중저속 자율주행 서비스
 - 순천만 국가정원 내 관람코스 관람객(보행자, 노약자) 공존형 저속 자율주행 셔틀 이동지원 서비스
-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
 - C-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
 -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및 지원시설 구축
 - 순천 교통관제센터 연계를 통한 자율주행차량, 인프라 및 이용자 지원센터 구축
 - 신호정보·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-ITS 인프라 구축
 - CCTV 활용 도로 위험상황 실시간 인지 및 대응 서비스 제공 추진
 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
 -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, 순천시, 관계기관,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를 받은 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, 보험사, 견인업체 등을 포함하는 비상연락체계 구성
 - 전라남도 및 순천시 교통·도로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,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안전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
 -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
 - 기타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지원 사항(별도 고시)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· 허가조건

- 특례를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전라남도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행횟수, 운행 시간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여객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이 운행 구간 및 운행형태에 적합해야 함
- 카메라 또는 C-ITS를 활용하여 신호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안전운행요건 확인 시 검증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이어야 함

·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
-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석에 상시 안전요원이 탑승해야 함
- 악천후 및 비상상황 등 발생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
- 월별 분기별 운행실적을 ‘순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전관리위원회’에 보고해야 함(보고방법 등은 별도로공지)

- 운행 전 기상환경, 운행환경, 차량상태 등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운행여부를 결정해야 함
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6대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수요응답형 셔틀서비스	정해진 노선을 따라 순환하는 셔틀 서비스	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- 기타
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의 기타 구체적인 요건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라남도가 별도로 공고할 예정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전라남도(www.jeonnam.go.kr)
- 문 의 처 :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(061-286-3961)

전라북도 새만금 고군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전라북도 새만금 고군산(Go-Gunsan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전라북도 군산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 치	면적 또는 연장
1	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일원 (고군산군도)	15.6km
A	고군산 연결도로(장자회전교차로~신시1사거리)	8.8km
B	고군산군도 내 지선(장자선, 선유선, 무녀선, 신시선)	6.8km
2	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 (군산국가2산업단지)	2.8km ² , 11.0km
3	새만금 방조제 도로 및 하부 테스트베드 도로	15.0km
합계		2.8km ² , 41.6km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【전라북도 새만금 고군산(Go-Gunsan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전체노선】



【1-A 고군산 연결도로】



【1-B. 고군산군도 내 지선(장자선, 선유선, 무녀선, 신시선)】



【2.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 (군산국가2산업단지)】



【3. 새만금 방조제 도로 및 하부 테스트베드 도로】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○ 지정목적

- 자율주행 기반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교통현안 해결에 기여
- 군산의 다양한 도로·기후·교통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실증 지원
- 기타 자율주행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

○ 지정기간 : '22. 6. 24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조례의 제정

-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을 위한 「전라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」(이하 “전라북도 조례”라 한다)를 제정

○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

- C-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
-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, 전기차 충전소 제공
- 시범운행지구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관제 플랫폼 및 사무용 공간 제공
-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

○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신호정보·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-ITS 인프라 구축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
-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(전라북도 조례로 정하여 별도 고시)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· 허가조건

- 특례를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전라북도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행횟수, 운행 시간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여객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운행 중 기상악화 시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 주정차대로 이동하여 대기 등 대응 요령을 포함한 자체 대응 매뉴얼을 사전협의 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적합함을 확인받은 자만 특례 신청이 가능
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이 운행 구간 및 운행형태에 적합해야 함
- 자율주행모드로 운행은 20km/h~80km/h의 범위의 속도에서 운행할 수 있어야 함
- 카메라 또는 C-ITS를 활용하여 신호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안전운행요건 확인 시 검증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이어야 함
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카메라, 레이더, 라이다, GNSS 센서가 모두 장착되어있어야 함
- 허가 시 특례 신청자의 영업 상 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라북도가 운행실적 등에 대한 보고 요청 시 협조할 것임을 전라북도와 협약해야 함
- 허가조건 적합여부 등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특례를 허가

·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24대(2022년 총 8대, 2023년 이후 총 16대)

- 시범운영지구 운영계획 수립 시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대한 수요를 제시했던 (주) 스프링클라우드에 허가대수의 상한 범위 내에서 특례를 우선 허가
- 그 외 본 시범운영지구에서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제반 서류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적합함으로 평가 시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허가대수의 상한을 확대

·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24대(노선 순환 수요응답형 셔틀서비스 10대, 로봇택시 4대 등)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수요응답형 셔틀서비스	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셔틀서비스	
로봇택시	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 수요에 따라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운영하는 서비스	
교통약자 이동서비스 등	대중교통 부족지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 서비스	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·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
-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석에 상시 안전요원이 탑승해야 함
- 악천후 및 비상상황 등 발생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
- 도로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운행 전 내부 브리핑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요원 등과 공유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본 절차의 점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
- 월별·분기별로 운행실적을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
- 안전관리위원회의 수시 점검에 응해야 함

○ 기타
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허가 시 운행구간·운임 등이 포함된 여객운송계획을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전라북도 홈페이지(<https://www.jeonbuk.go.kr>), 문의처 : 도로교통과(063-280-4447)

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경기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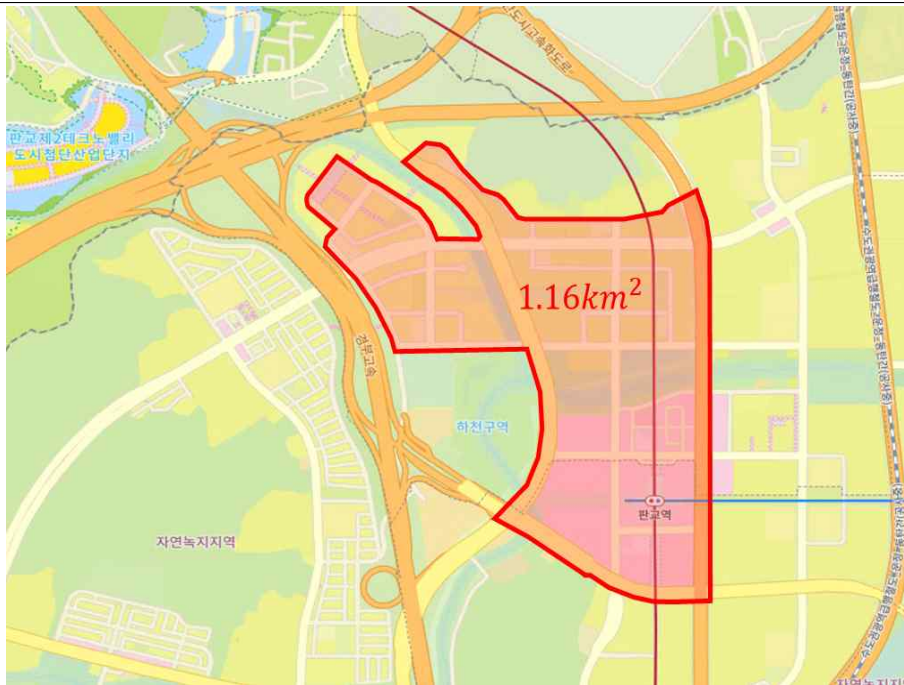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치	면적 또는 연장
1	성남시 수정구 일부 구역 (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부 구역)	$0.18km^2$
2	성남시 분당구 일부 구역 (판교 제1테크노밸리 일부 구역)	$1.16km^2$
3	대왕판교로 일부 도로 (구역 간 연결)	$0.53km$
계		$1.34km^2$, $0.53km$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【성남시 수정구 일부 구역(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부 구역)】



【성남시 분당구 일부 구역(판교 제1테크노밸리 일부 구역)】



【대왕판교로 일부 도로(구역 간 연결)】

4. 시범운행지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

○ 변경목적

- 기존 시범운행지구 영역을 노선에서 구역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의 맞춤형 자율주행

서비스 제공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

- 변경 영역은 대중교통 이용객 수요가 높은 구역으로 수요응답형, 순환셔틀,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제공 가능
- 제 1·2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혼잡, 대중교통 공급 부족 등의 문제점을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
- 지정기간 : '22. 6. 24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-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 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 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-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 -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, 전용 통신망, GIS 시스템, 도로·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 풍부한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갖추었으며,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한 '경기도 자율주행센터' 운영
 -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·시범운행하는 기업 등에 실시간 관제정보 및 안전 서비스(보행자 케어, 도로 감시, 환경 감시, 교통신호 현시 등)를 수신할 수 있는 V2X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
 - CCTV를 통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범운행지구 내 도로 구간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실시
 - 도로시설물 변경이 수반되는 도로공사정보를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 지속 업데이트
 - 자율주행자동차 충전·정비·주차 공간 및 사무 공간 등을 포함하는 '스마트 모빌리티 실증 허브'를 구축(~'23)하여 관련 기업 등에 제공
 -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범운행지구 운영·관리를 위해 경기도·성남시 유관부서 및 시민, 기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'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리 협의회' 구성·운영
 -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·시범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비상상황 안전관리 등을 위한 안전관리 규칙 마련·운영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
 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이 본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
 - 60km/h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할 수 있어야 함
 -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상시 탑승해야함
 - 경기도가 제공하는 V2X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함
-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
- 약천후 및 비상상황 등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주행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
- 정기 성과보고서, 분기별 운행실적 등 경기도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 협조해야 함
- 본 시범운행지구 운영 정책에 따라 운행 빈도·요금을 설정해야 함
- 본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

· 허가대수의 상한 : 무상 총 10대 이하 / 유상 총 25대 이하 ('22년 무상서비스 5대, 유상서비스 5대)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유상 서비스	여객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를 모두 포함한 대수	
무상 서비스	서비스가 안정화 되기까지 기한을 정하여 무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수의 상한	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** 무상서비스의 경우 유상서비스로 전환 전 시범서비스의 경우에만 허가

○ 기타

-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청,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고시 공지 예정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경기도청 (www.gg.go.kr)
- 문 의 처 : 경기도 미래산업과 자율주행첨단단지팀(031-8008-535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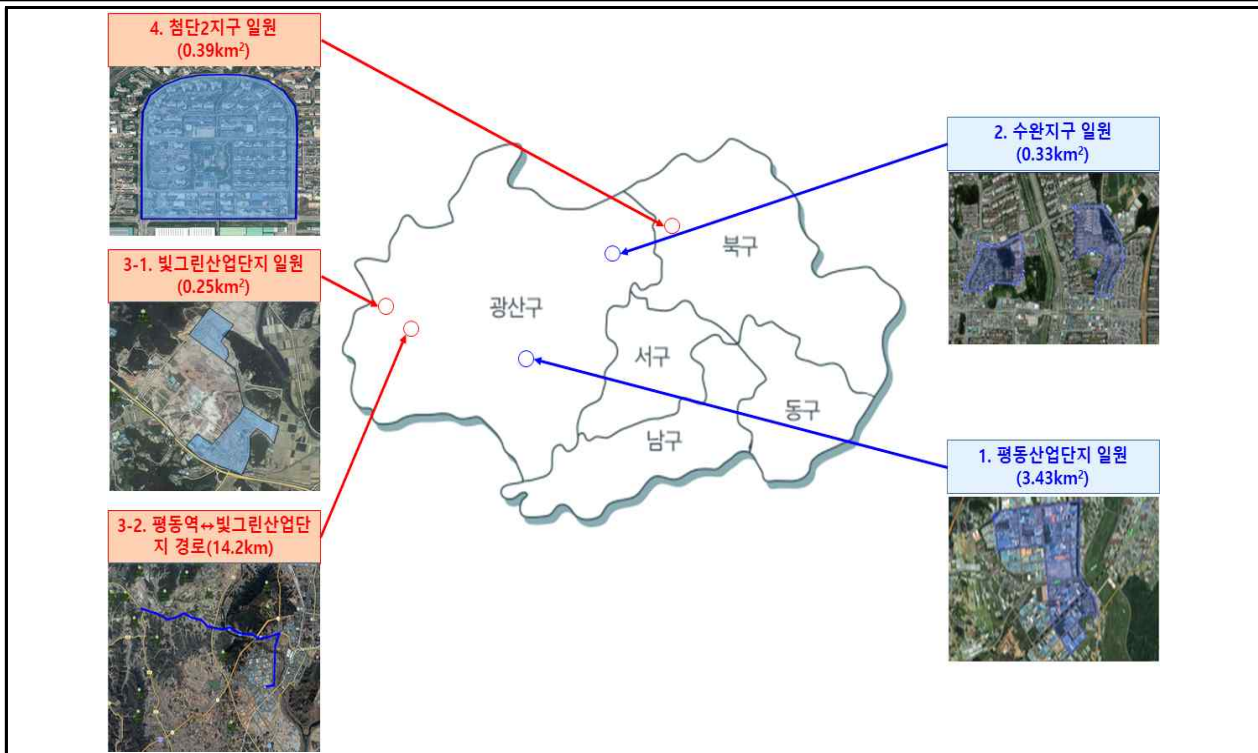
광주광역시 특수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광주광역시 특수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광주광역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 치	면적 또는 연장	
1	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원	3.43km ²	
2	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일원	0.33km ²	
3	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산단 일원	0.25km ²	14.2km
4	광주광역시 북구 첨단2지구 일원	0.39km ²	
합 계		4.40km ²	14.2k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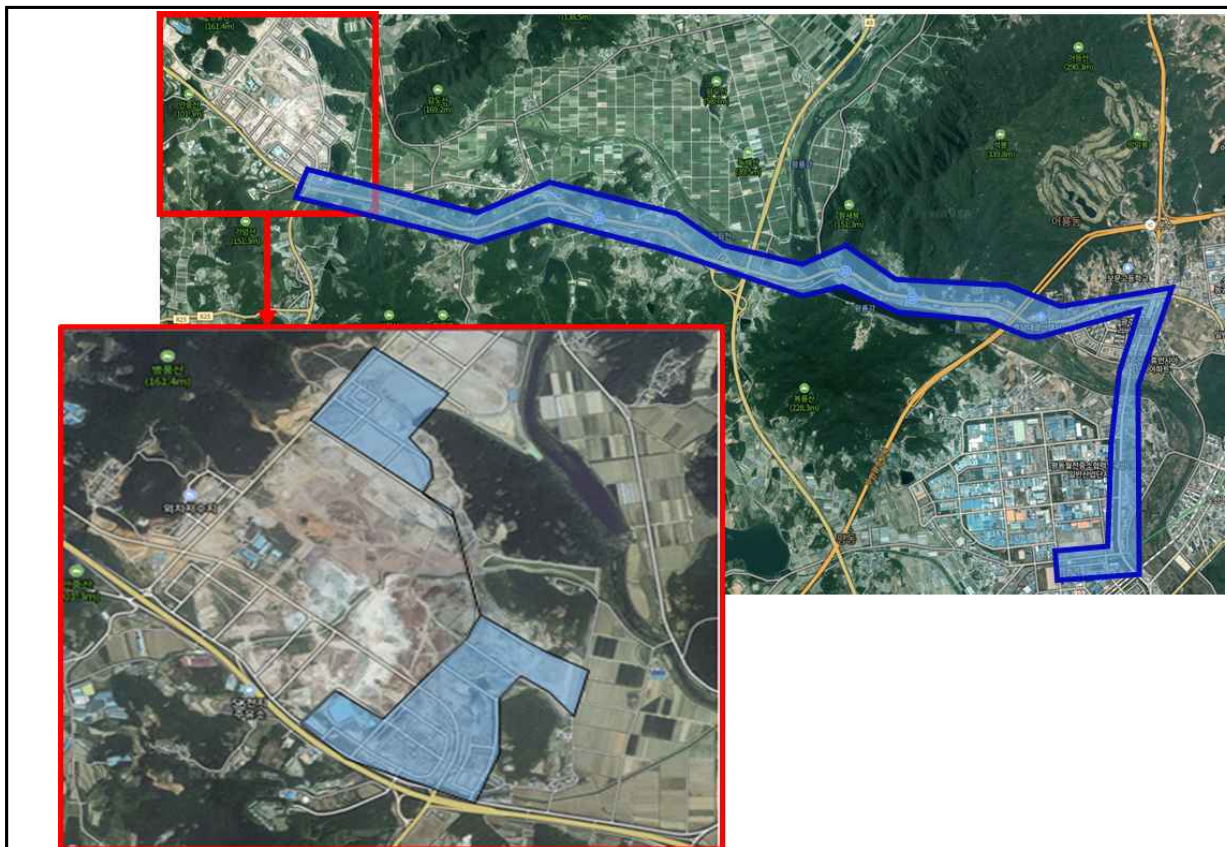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【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원】



【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일원】



【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산단 일원】



【광주광역시 북구 침단2지구 일원】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○ 지정목적

- 다양한 형태의 특수목적 자율주행자동차 실증·현장적용을 통한 상용화 촉진

○ 지정기간 : '22. 6. 24.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'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(2019.12.6. 지정)' 사업과 연계 추진

- 관련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실증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특례 적용

구분	사업명	내용	적용되는 규제특례
1	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	·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무인 저속 특장차를 이용한 공공서비스(노면청소, 생활폐기물 수거, 공공정보 수집) 실증	·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2	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·공유 실증	·무인 특장차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 및 공유할 수 있는 엣지형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실증	·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·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【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주요내용】

○ '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' 사업과 연계 추진

- 관련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실증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특례 적용

구분	사업명	내용	적용되는 규제특례
1	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스토어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	·자율주행 셔틀 기반으로 무인 스토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자율주행 스토어 서비스 실증	·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2	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비대면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	·자율주행 셔틀 기반 무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	·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·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【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사업 주요내용】

○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
- 사전검증
 - 실증 전 실증지역을 모사한 가상환경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(경기 화성 K-City, 새만금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, 한국자동차연구원 원내 자동차 테스트베드 등)에서 안전성 검증 실시
- 단계적 실증
 - 초기에는 교통량이 적고 주정차된 차량이 없는 구간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된 상태로 실증을 실시
 - 안전성·신뢰성이 검증됨에 따라 운행구간을 확대하고 운행조건 제한을 완화하여 일반적인 도로환경에 가까운 환경에서 실증
- 안전장치
 - 실증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고장방지 다중화(Fallback) 기능 및 3종의 비상정지 장치(외부 비상정지 스위치, 근거리 원격 비상정지 장치, 관제센터를 통한 원격 비상정지 장치) 마련
 - 충돌상황 발생 시 사고의 정도에 따라 자율주행 기능 비활성화, 수동주행,, 구동계통 전력 차단 등 비상모드 전환
- 운영상 안전 확보
 - 실증 구역에 실증안내 표지판, LED 전광판 등 설치
 - 교차로에서는 신속한 통과를 위해 주행속도 변경(통상 주행속도인 5km/h에서 20km/h로 변경)
 - 매 운행 시 운행상황을 관리할 안전 관리자를 지정
 - 불법 주정차 사전정비 등 실증환경을 개선
-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을 담은 ‘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
 - 실증을 하는 자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

○ 기타

- 실증주체 간 실증구간 및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와 실증계획 취합 및 통합 관리
- 실증일정, 구간 등에 대해 실증구역 인근 주민 사전공지
- 교통방송 광고, 실증구역 내 입주기업(산단) 등 협조를 통해 실증구역 내 불법 주정차 최소화

6. 관련자료의 열람방법

- 광주광역시 홈페이지(www.gwangju.go.kr), 문의처: 자동차산업과(062-613-4852)

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(Daegu Autonomous Driving Trial Zone)
○ 관할 시·도 : 대구광역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치	면적 또는 연장
1	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·삼덕·시지·노변동 일원(수성알파시티)	2.2km ²
2	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·유가읍 일원(대구테크노폴리스)	7.7km ²
3	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구지면 일원(대구국가산업단지)	9.4km ²
4	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일원(대구테크노폴리스-대구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)	2.6km
5	대구광역시 달성군 설화명곡역~ 테크노폴리스로	20km
계		19.3km ² , 22.6km

* 1~4번 : 기 지정('20. 12. 8.), 5번 : 추가지정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(추가 지정 구역 : 대구 달성군 설화명곡역 ~ 테크노폴리스로 ~ 쌍계오거리)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○ 지정목적

-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,
- 기 추진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결과물을 시범운행지구에서 안전성·경제성을 검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고, 테크노폴리스 지구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

○ 지정기간 : '22. 6. 24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

-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
○ 시범운행지구 내 도입예정 서비스 범위·구간

- (수요응답형 로보택시) 지하철 1호선(설화명곡역, 화원역, 대곡역)과 테크노폴리스 지역을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
- * 서비스 지역 : 지하철 1호선(설화명곡역, 화원역, 대곡역), 테크노폴리스로, 테크노폴리스, 대구 국가산업단지, 산단 연결도로

○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테크노폴리스로 WAVE RSU 18대, 돌발상황검지기 3대, 측위보정기준국 1대, RFID 2대, 보행자 검지기 4대, 영상수집장치 2대, 신호제어기 4대 등 구축
- 테크노폴리스 도로교통공단 신호 현시정보 제공 30개소, WAVE RSU 2대, 돌발상황검지기 6대, 노면 기상정보검지기 1대 등 구축
- 테크노폴리스 인프라 추가 설치 계획 : WAVE RSU 28대, 영상돌발상황검지기 30대, 레이더 돌발상황검지기 6대, 라이다 돌발상황검지기 1대,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8대 등 구축('22년도)
- 기존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기 구축(통신)되었거나 구축 중인 인프라(모니터링시스템, 노면인프라 등) 연계 및 구축된 도로시설 공동 활용(버스정류장, 안내시설) 실증
- 테크노폴리스로의 자율주행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 관제시스템 운영 및 테크노폴리스, 국가산단은 자율주행 융합지원센터('22년 말 완공)에서 안전 운행 관리

○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- 시, 관계기관, 유상운송사업자, 보험사, 견인업체 등의 비상연락망 작성 및 연락체계 확인
- 유상운송사업자는 시범운행에 따른 차량운행자 정보, 사업자 비상연락망, 차량운행 현황, 운행경로, 시범운행 문제점 등 수시 제출
- 자율주행차량 안전운전자는 운행전 점검항목(기상환경, 운행환경, 차량환경) 작성하여 운행 여부 결정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홍보로 일반차량 및 보행자 주의 안내
- 도로·교통 시설물 및 인프라 안전 관리 방안
- * 사업자 서비스 실증 노선에 따른 임시정류장 설치 및 관련 도로교통 시설 보완·보수
- * 도로 노면에 자율주행 차량 정류장임을 표시하여 인근 차량, 이륜차, 보행자 등에 안내하여 사고 예방

○ 시범운행지구 지원 방안

- 자율주행 선도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, 자율주행차량 운영비 등 예산 확보·지원

○ 사업성과 및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에 관한 사항

- 평가위원회 구성 시장성, 혁신성, 안전성 등 정량적 평가
- 시범운행 서비스사업 만족도 조사하여 운영방안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
· 허가조건

-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,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름
- 도로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 가능하여야 함
-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관제센터와의 V2X 통신이 가능하여야 함

·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13대(유상 8대, 무상 5대 등)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마을버스	수성알파시티 도심지 내 순환형 마을버스 유상 운송 서비스	
수요응답형 로봇택시	달성군 설화명곡역~테크노폴리스로,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도심지 내 승용차 기반의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	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·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
-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및 보관
- 월별, 분기별 운행실적을 대구광역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
- 본 시범운행지구 운영 정책에 따라 운행 빈도, 요금을 설정하여야 함
- 본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

· 기타 운영계획 상 주민 및 특례신청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

- 자율주행차량에 안전운전자 상시 탑승하여 주행시 주변 환경을 주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구역에서 수동 운전 전환과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허가 시 운행구간·운임 등이 포함된 여객운송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
- 한정운수면허 발급 요건,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대구광역시(<https://www.daegu.go.kr>) ⇨ 정보공개 ⇨ 알림정보 ⇨ 고시공고
- 문 의 처 :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(053-803-6872)